

소 장

원 고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대표자 회장 정 연 순

2.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정강자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박 수 빈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신한국빌딩 6층

전화: 02-3477-3400, 팩스: 02-536-8058

2.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해주희, 오현정, 오민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전화 : 02-582-0606, 팩스 : 02-596-8004

피 고 국방부장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국방부 (우: 04382)

정보 비공개결정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6. 8. 4.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참여연대에 대하여 한,
 - 가. 2016. 7. 30.자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 나. 2016. 8. 10.자 별지3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 다. 2016. 10. 19.자 별지4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각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 1)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이라 합니다)은 변호사 단체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회칙에 규정된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및 임원을 통하여 원고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과 대표자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입니다(갑 제1호증의1 민변 회칙, 갑 제1호증의2 민변 고유번호증).

2) 원고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관에 규정된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임원을 통하여 원고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이를 담당할 기관과 대표자에 대한 정함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갑 제2호증의1 참여연대 정관, 갑 제2호증의2 참여연대 비영리단체등록증).

나. 피고

피고는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청입니다.

2. 국내 사드¹⁾ 배치 결정 경과

가. 국내 사드 배치 결정

한미 당국은 2016. 2. 7.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1) 사드(THAAD)는 종말단계고도지역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적국의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이전인 종말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관련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하는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 3. 18.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활동 계획을 확정된 상태”라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기지 입지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2016. 3. 22. 미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과 (사드 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16. 7. 8.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THAAD)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에서 결정하였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라고 국내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갑제3호증- 국방부 7. 8.자 보도자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위 발표 5일 후인 2016. 7. 13.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 장관이 승인했다”라고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를 승인하였습니다.

나. 성주군민의 강력한 반발과 국방부의 제3부지 평가결과발표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성주군민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성주의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최적지라고 공식발표한지 79일만인 2016. 9. 30. 주한미군 사드배치 제3부지 평가결과를 경상북도와 성주군에 발표하면서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이 위치한 달마산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가장 충족한 곳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 8. 22. 성주군수의 요청에 따라 까치산, 염속봉산, 달마산 등 3개 부지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결과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함에 따른 것”이며, “한미공동실무단은 8월27일부터 9월27일까지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고 환경·토목·전자파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부지 가용성을 평가” 하였다는 것입니다(갑제4호증 - 국방부 9. 30.자 보도자료).

다. 한미공동실무단의 사드체계 군사적 효용성 검토결과에 대한 의문

국방부는 처음 2016. 7. 8. 사드를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한미 공동실무단의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하여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3부지인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더 최적부지라고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사드 배치가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등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 검토결과보고서’ 등의 정보를 통해 어떤 경위로 국내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였는지, 어떤 검토과정을 통해 부지를 이동하기로 하였는지 등 국내 사드배치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민주적 공론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여야 합니다.

논의의 검토를 위해서 사드와 관련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판단 아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 민변은 별지1 목록 기재사항을, 원고 참여연대는 별지2 목록 기재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국방부의 사드배치 공식발표가 있는 날인 2016. 7. 8.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각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민변에 대하여는 2016. 8. 4.자로, 원고 참여연대에 대하여는 2016. 7. 30.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별지1 목록의 “군사적 효용 검토결과 보고서”, 별지2 목록의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는 “한미Ⅱ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바람”이라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정보비공개처분을 내렸습니다{갑제5호증 - 민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갑제6호증 - 참여연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1)}.

2) 원고 참여연대는 별지3 목록 기재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2016. 7. 29.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으나 2016. 8. 10. 피고로부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는 한미Ⅱ급비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그 거부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갑제7호증 - 참여연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2)}.

3) 원고 참여연대는 별지4 목록 기재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2016. 10. 12.에도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9.자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 제3부지 평가 관련자료’ 중 ‘부지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

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평가내용이 한미 II 급비밀이라는 사유로 거부처분하였고,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면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7호증 - 참여연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3)}.

4) 이하에서는 별지1~4 목록 기재사항 중 청구내용이 한미 2급 비밀에 해당함을 사유로 들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내린 거부처분을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이라 하고, 별지4 목록의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이라 하겠습니다.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들’이라 하겠습니다.

4. 이 사건 거부처분들의 위법성

가. 정보공개법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정보공개법 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정보공개법 제3조).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들의 근거로 제시한 예외사유는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에 관하여

1)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위반 - 비공개 사유의 불명확성

행정청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 사유로 단지 “한미 II급 비밀로 공개가 불가함을 양해바람” 이라고만 칭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만 하였을 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어떻게 현저히 해하는지, 어떤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들이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한미 II급비밀’이라는 용어가 근거하고 있는 법령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해당 비밀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등 피고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한미 II급비밀’ 자체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제1호).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원고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사유의 위법성을 다프으로써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취소소송으로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여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2호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거부사유로서 원고들이 청구한 내용이 ‘한미 II급비밀’에 해당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II급비밀’이라는 용어는 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다른 개념으로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n급비밀’, 보안업무규정상 ‘n급비밀’,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의 ‘n급비밀’이라는 개념 등이 있습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문제는 군사분야로 분류될 것이므로 그나마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n급비밀’과 유사한 개념으로 추론됩니다. 피고가 이 사건 2호 거부처

분을 하면서 막연하게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한미 II 급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뿐이어서, 원고들로서는 이 ‘한미 II 급비밀’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II 급비밀’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제3조에서 군사기밀을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군사기밀을 ‘군사 n급비밀’이라는 명칭으로 정리하면서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 급비밀, II 급비밀, III 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I 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II 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III 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피고가 거부처분 사유로 제시한 ‘한미 II 급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가 모호하여 그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는 막연하게 ‘한미 II급비밀’으로 지정된 보고서의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추상적으로 정한 뒤 이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듯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모호한 개념을 처분사유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 위법성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알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입니다.

나) ‘한미 II급비밀’이 근거한 법령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기 위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의 공개요청은 그 상대방, 처리절차 및 공개의 사유 등이 전혀 다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그 공개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9351, 판결)이라면서 군사기밀보호법상 2급 비밀로 지정된 감사원보고서에 대한 당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과 동일한 것이거나 그 공개요청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

다고 판단했던 원심이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한미 II급비밀’ 군사기밀보호법상 절차를 밟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하는 ‘군사 II급비밀’을 칭하는 다른 용어에 불과하다면, 원고들은 해당 정보에 대하여 군사기밀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미 II급비밀’이 군사기밀보호법 외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된 개념이라면 원고들은 해당 법령에 따르거나, 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곧, 피고가 ‘한미 II급비밀’이라고만 적시한 점은 결국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방법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불해당성

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이는 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제1항 제2호에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

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공개청구권자의 구체적 이익 등과 행정청이 공개 거부 사유로 드는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모두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별지1~4 목록 기재 정보들의 경우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의 구체적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큰 경우도 아닙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2호 거부처분의 대상이 된 정보들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습니다.

원고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2016. 7. 8. 한국과 미국이 국내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발표하는데 근거가 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관한 검토자료, 최적부지를 선택하기 위한 검토자료, 공동실무단의 운영결과보고서 등입니다(별지1~4 목록 참조).

사드 자체의 군사적 효용성에 관해서라면 이미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되고 국민에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사드 배치 관련 홍

보자료 송부 안내와 협조요청’ 등의 공문을 보내는 등 정부차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갑 제9호증 - 노컷뉴스 국방부 사드배치홍보강연). 홍보의 근거가 되는 내용은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한 바로 그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사드배치의 효용성, 사드체계의 군사적 유용성 등의 내용이 공동실무단의 검토자료에 등장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어 비공개될 이유가 없을뿐더러 기 공개된 내용이므로 새로이 검토보고서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방부가 나서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 등이 원고들이 청구한 별지1~4 목록 기재 정보들에 제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만하는 것이고, 또한 언론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행하여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과잉금지의 원칙(그 중에서도 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므로 국가기밀의 보호를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인적 법익보호보다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군사기밀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의 조화를 위하여 광범위한 군사기밀의 지정은 설사 각 기밀이 그 표지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기밀의 범

위가 필요이상으로 광범할 때 군사사항에 관한 한,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는 물론 입법이나 학문연구를 위한 자료조사 활동과도 갈등 또는 마찰을 빚게 되어 표현의 자유(알 권리)나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감독도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 라고 하였습니다.

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일정범위의 군사사항을 군사기밀로서 지정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터이지만, 거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 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監視圈) 밖의 영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니 그 보호막을 배경으로 불법 비리 책임회피적인 사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범위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이상의 비밀의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비협조·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아울러 국민의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 내지 공동체 구성원의식을 희석시키고 정치적 무력감, 소외감, 적대감을 갖게 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비비밀(非秘密)의 비공개(非公開)에서 오는 부작용보다는 비밀이 공개되었을 때의 피해에 대하여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의심스러우면 일단 비밀로 해둠으로써 국가안보에 대비하고, 겸하여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면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통제까지도 벗

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분류한 기밀이 시각과 관점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고 설사 일부 그 기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밀로 함으로써 얻는 국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대내적 손실이 더 크거나 대외적으로 한국의 국위선양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이라면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총력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가능한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관계당국에서 어떠한 사항을 군사기밀로 규정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실질가치의 유무 및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군사기밀이 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89헌가104, 1992.0.0, 전원재판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드배치는 비단 한국의 안보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권의 군비경쟁을 유발시키는 등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검증된 객관적 자료의 제공 없이 추측과 일반의 논평등으로만 공론장에서 사드의 효용성이나 배치문제를 논하고 있는 셈이 된다면 이는 국민의 판단과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은 한 쪽에서는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사드 배치에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이라 칭하며 민주적 공론장에서의 논의를 거부하는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방침 때문에 사드와 관련된 여론이 혼란스

럽기만 합니다(갑 제10호증 - 연합뉴스 사드 괴담 보도 6개월간 1천690건).

검증된 정보를 공개하여 논란을 불식시키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여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의 차원에서 더욱 장려되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엄정한 여론의 여과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보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이고도 합리적인 공론장 형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의 위법성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의 별지4 목록 기재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그 중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관하여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관한 사유는 지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의 대상이 된 전문가 자문 내용 및 전문가 명단의 경우, 사드배치라는 매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검토·논의한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또는 마.목 소정의 정부의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준하여 그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사 공무원 등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자문 내용에 관하여서는 정보공개

법 제14조에 따라 공개가능한 정보와 공개불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부분공개가 분명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사유를 들어 원고 참여연대의 공개처분에 관하여 전부비공개결정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6호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 이르렀는 바, 부디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들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의1	민변 회칙
갑 제1호증의2	민변 고유번호증
갑 제2호증의1	참여연대 정관
갑 제2호증의2	참여연대 비영리단체등록증
갑 제3호증	국방부 7. 8.자 보도자료
갑 제4호증	국방부 9. 30.자 보도자료
갑 제5호증	민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갑 제6호증	참여연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1)
갑 제7호증	참여연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2)

갑 제8호증	참여연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3)
갑 제9호증	노컷뉴스 국방부 사드배치홍보강연
갑 제10호증	연합뉴스 사드 괴담 보도 6개월간 1천690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 소장 부분	1부
3. 소송위임장	1부
4.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2016. 10.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박 수 빈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해주희, 오현정, 오민애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 지 1

목 록

1. 7.8.자 한미 군 당국의 발표가 나오기까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한 문서
2. 공동 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하였다’ 고 밝혔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끝.

별 지 2

목 록

1. 7/8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 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내 THAAD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의 근거자료
2. 7/8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발표한 “THAAD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 를 선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검토 현황 자료
3.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 자료 : 회의일자, 참석자, 안건, 회의록. 끝.

별 지 3

목 록

1.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작성, 승인한 운영결과보고서(혹은 검토보고서). 끝.

별 지 4

목 록

1.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 제3부지 평가 관련 자료
 - 부지 가용성 평가 내용
 - 전문가 자문 내용, 전문가 명단
 -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보고서
 - 공동실무단 평가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회의 일자, 참석자, 안건, 회의록 등. 끝.